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2,186,122	13,865,584
일반회계	410,698,719	12,320,962
특별회계	51,487,403	1,544,622
기타특별회계	51,487,403	1,544,622
상수도 특별회계	14,399,114	431,973
수질개선 특별회계	28,111,034	843,33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5,694	11,8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00,177	24,005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4,445,868	133,376
주차장 특별회계	826,000	24,780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2,509,516	75,28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9,905천원(일반예비비 1,206,09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23,81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7,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